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02-2100-1730)	담 당 자	유 미 리 사무관 (02-2100-1737)
			정 진 구 사무관 (02-2100-1809)

제 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 결과 발표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 '20.2월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논의·승인한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 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Quality and Consistency”)
- 이에 따라 FATF는 '20.4.16.(목) 18시30분(한국시각)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발표하였습니다.

<FATF 상호평가>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며,
 -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 *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함

<우리나라 상호평가>

□ 우리나라 상호평가는 '19.1월초부터 개시되었으며 '19.7월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작성,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

○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 보고서”는 '20.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2.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비공식 번역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2020. 4. 1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정 보 분 석 원

|| 목 차 ||

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상호평가 개요	1
1. FATF 개요	1
2. FATF 상호평가 개요	2
II.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대응 경과 및 상호평가 결과	4
1. FATF 상호평가 대응 경과	4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	5
< 부 록 >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평점표	7

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상호평가 개요

1 FATF 개요

- (설립 목적) UN 협약*과 안보리 결의의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89년 설립(우리나라는 '09년 가입)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회원 구성) 정회원(37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
 - 산하 9개 지역기구를 통해 전세계 200여개 국가를 관할

< 39개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현황 >



< 9개 지역기구 >

- ① APG(아시아·태평양)
- ② Moneyval(유럽)
- ③ EAG(유라시아)
- ④ ESAAMLG(동남아프리카)
- ⑤ GIABA(서아프리카)
- ⑥ GABAC(중앙아프리카)
- ⑦ MENAFATF(중동/북아프)
- ⑧ CFATF(캐리비안 해)
- ⑨ GAFILAT(라틴아메리카)

□ FATF의 주요 역할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를 가려내 금융제재 시행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FATF는 관할범위를 마약자금('89년)에서 중대범죄 자금세탁('96년), 테러자금조달('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년)으로 지속 확대

2 FATF 상호평가 개요

FATF 상호평가의 주체, 주기, 중요성

- FATF 상호평가의 주체는 FATF와 9개 지역기구
 - (FATF 회원국) FATF가 주관, 해당 지역기구와 공동 평가
 - (FATF 비회원국) 9개 지역기구가 주관이 되어 평가
-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마다 시행
 -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
 - ※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으로 가입한 '09년에 진행중인 3차 라운드 상호평가시 처음으로 상호평가를 수검
 -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FATF 총회에서 2개국에 대해 상호평가 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
 - 상호평가는 수검국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팀의 현지실사, 보고서 초안 협의, FATF 총회에서 보고서 논의 채택 등 14개월이 소요
- 상호평가는 FATF 국제기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이 목표
 -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 금융기관들의 환거래 개설(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등)과 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 금융비용 결정에도 영향

상호평가의 항목, 평가등급, 후속점검

□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법규 구축여부(기술평가)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과적 이행(효과성) 여부도 평가

평가대상		법률.제도 구축 여부 (기술평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 (효과성 평가)
평가항목		FATF 40개 권고사항의 기술적 (법률제도 구축) 이행 여부	11개 즉시성과(Immediate Outcome)의 이행 여부
	평점대상	40개 권고사항	11개 즉시성과(IO)
평가 등급	이행 등급 ←	① 이행 (C: Compliant) ② 대부분이행(LC: Largely)	① 높은 효과성(HE) ② 상당한 효과성(SE)
	미이행 등급 ←	③ 부분이행(PC: Partially) ④ 미이행(NC: Non-compliant)	③ 보통 효과성(ME) ④ 낮은 효과성(LE)
상호 평가 결과	①정규 후속점검	■ PC 또는 NC가 8개 미만이고, ■ 핵심권고 5개 모두 C 또는 LC	■ HE 또는 SE 5개 이상
	②강화된 후속점검	■ PC 또는 NC가 8개 이상이거나, ■ 핵심권고 1개라도 PC 또는 NC	■ LE 또는 ME 7개 이상이거나, ■ LE 4개 이상

□ 각국은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①정규 후속점검, ②강화된 후속점검, ③ICRG 점검 대상 중 하나로 분류됨

- ※ FATF 총회 보고주기 :
- ① 정규 후속점검: 3년 주기 보고
 - ② 강화된 후속점검: (1회) 1.5년, (2회-) 1년
 - ③ ICRG 점검대상: 매 FATF총회

II.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대응 경과 및 상호평가 결과

1 FATF 상호평가 대응 경과

- **(사전 준비)** '18.11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을 확인·분석하는 「국가 위험평가」 보고서 마련
 - '18.11.27에 동 보고서와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유
 - 이를 위해 '15.10월부터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12개 정부 부처 참가)을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 **(법규 정비)** '18년부터 '19.6월 기간 중 2개 법률, 관련 시행령, 업무 규정 개정, 검사·제재규정 제정 등 법률과 규정을 정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2019.1월)과 시행령 개정(2019.2월 등 3차례)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2019.4월)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개정(2019.6월)
 - 특정금융거래보고 등에 관한 검사·제재규정 신설(2018.7월)
 - AML/CFT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19.1월)
- **(FATF 상호평가)** '19.1.6. 제1차 설명자료 제출 → '19.3.1. 제2차 설명자료 제출 → '19.6.30~7.18(19일간) 평가팀 방문 실사
 - * 자료작성, 방문실사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
 - 특히, 방문실사 때는 FIU, 법무부, 금융회사 등 68개 기관 400여명이 면담하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
- **(FATF 총회 토의)**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를 '20.2월 FATF 총회에서 논의하고 승인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

□ 전반적인 평가

-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의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임
-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함

□ 부문별 이행 수준

- **(기술 평가)** AML/CFT 법제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 항목 중 32개(80%)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음
 - 반면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음
- **(효과성 평가)** 법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음
 - 반면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 기술평가(TC) 중 <u>32개 이행등급</u> ◇ 11개 효과성(IO) 중 <u>5개 이행등급</u> 	} ⇒	“강화된 후속점검” 해당 (3단계 중 중간수준)
--	-----	-------------------------------

※ 기술평가와 효과성 평가의 세부 항목별 등급은 “붙임” 참조

□ 상호평가를 받은 FATF 회원국들과 비교

- 한국은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

□ 40개 기술평가(TC) 등급

R.1 RBA	R.2 협력/조정	R.3 자금세탁범죄	R.4 몰수	R.5 테러자금범죄	R.6 테러관련TFS	R.7 확산금융TFS	R.8 비영리단체	R.9 비밀유지법률	R.10 고객확인
LC	LC	LC	C	LC	PC	PC	PC	LC	LC
R.11 기록보관	R.12 PEPs	R.13 환거래은행	R.14 MVTS	R.15 새로운기법	R.16 전신송금	R.17 제3자의존	R.18 내부통제	R.19 고위험국가	R.20 의심거래보고
C	PC	C	C	C	LC	C	LC	LC	C
R.21 정보누설	R.22 DNFBPs_CDD	R.23 DNFBPs_STR	R.24 법인투명성	R.25 신탁투명성	R.26 규제/감독	R.27 감독기관관련	R.28 DNFBPs_감독	R.29 FIU	R.30 수사당국책임
C	PC	PC	PC	LC	LC	C	PC	C	C
R.31 수사당국권한	R.32 현금휴대반출	R.33 통계	R.34 지침/피드백	R.35 제재	R.36 UN협정서	R.37 국제사법공조	R.38 동결/몰수공조	R.39 범죄인인도	R.40 기타국제협력
LC	LC	C	LC	LC	LC	LC	C	LC	LC

* 기술평가 : Compliant > Largely Compliant [이상 '이행'] > Partially Compliant > Non Compliant
 Technical compliance ratings can be either a C – compliant, LC – largely compliant, PC – partially compliant or NC – non compliant.

□ 11개 효과성 평가(Immediate Outcomes) 등급

IO.1	IO.2	IO.3	IO.4	IO.5	IO.6	IO.7	IO.8	IO.9	IO.10	IO.11
정책/공조	국제협력	금융감독	예방조치	법인/신탁	금융정보	수사/기소	몰수	테러자금수사	테러정밀제재	확산금융제재
SE	SE	ME	ME	ME	SE	ME	SE	SE	ME	ME

* 효과성 : HE(높은 수준 효과성) > SE(상당한 수준) [이상 '이행'] > ME(보통 수준) > LE(낮은 수준)
 Effectiveness ratings can be either a High- HE, Substantial- SE, Moderate- ME, or Low – LE, level of effectiveness

별첨2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1. 본 보고서는 2019.6.30-2019.7.18 현장실사 기간 당시 이행 중인 대한민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조치들을 요약해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FATF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수준 및 AML/CFT 제도의 효과성 수준을 분석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확인사항(Key Findings)

a) 한국은 지속적 위험평가 과정을 통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특히 긍정적이다. 법인 및 법률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수반되면 유용할 것이다. AML/CFT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협력·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 운영체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공공·민간부문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금융(PF: 핵/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 이하 “확산금융”) 관련한 조정체계는 대체로 비정기적이어서 보다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 동 국문 번역문은 FATF 한국 상호평가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부분에 대한 참고용 비공식 번역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FATF 홈페이지 (www.fatf-gafi.org)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설명)

- ① ML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행위
- ② TF (Terrorist Financing): 테러자금조달
- ③ PF (Proliferation Financing): 핵/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 (“확산금융”)
- ④ 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 국내·국외·국제기구 고위직 등 정치적 주요인물
- ⑤ 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 귀금속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b)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종합적인 AML/CFT 제도의 규율을 받으며 이는 대체로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관련 정밀 금융제재(TFS), 국내 및 국제기구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 금융회사·카지노와 이들을 감독하는 기관들은 대체로 AML/CFT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감독기관들은 대부분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감독당국은 예외다. 이렇게 여러 강점이 있음에도 카지노를 제외한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부문이 AML/CFT 제도의 적용이나 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장점들이 다소 힘을 잃는다.
- c) 한국의 법집행기관(LEAs)은 금융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추가 자원이 확보되고 특히 조세범죄와 같은 고위험 부문에 대한 전략분석 및 심사분석이 강화된다면 법집행기관의 금융정보 활용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법집행기관은 '팔로더머니(follow the money)'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운영 측면이나 조직구조 측면에서의 변화에 힘입어 이러한 접근법은 더욱 강화돼 왔다. 한국은 위험에 기반하여 자금세탁범죄(ML)를 수사·기소·처벌한다. 그러나 조세범죄가 한국에서 가장 큰 범죄수익 생성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한국의 전제범죄 체계에 포함된 조세범죄의 범위는 일부분에 불과해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ML)의 원활한 수사·기소·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차명계좌의 사용을 예방하고 추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는 여전히 빈번하며 그 특성상 수사가 어렵다.
- d) 범죄수익 환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정부 중점 과제가 되어 자원과 전문성 측면이 모두 강화될 수 있었다. 한국은 범죄수익 환수, 세금 추징, 반환 등을 통해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상당부분 박탈할 수 있다. 몰수대상 자산의 실제 환수를 늘리고 이용 가능한 기제를 잘 활용하여 환수를 활성화, 보장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들은 대체로 국가적 위험에 부합하여 범죄수익과 자산을 몰수·추징한다.
- e) 테러자금조달 혐의 기소 건이나 유죄판결은 없으며, 이는 한국의 위험 프로파일과 일치한다. 테러자금조달 혐의와 관련된 수사·조사가 총 86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자국의 위험과 취약성에 부합하여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고 있고 관련당국은 테러자금조달 발생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기관 간 협력·조정은 원활하게 이뤄지며 대안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위험 및 개황

2. 한국의 주요 자금세탁(ML) 위험으로는 조세범죄, 불법도박, 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범죄(ML)과 국외재산도피, 횡령·배임 등 7대 주요 범죄수익 창출 범죄가 있다. 한국은 (자국에서 주요 ML/TF 수단인) 현금거래의 남용, (최근 부상한) 가상자산 등의 취약성에서 높은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AML/CFT 의무이행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VASPs)는 아직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다.
3.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현재로는 낮다. 한국에서 자생한 테러조직이 없고¹⁾ 한국이 최근 테러 공격을 받은 적도 없으며 한국 비영리단체(NPOs)가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된 적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없다. 테러활동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건(개인 1명의 선동)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국이 테러자금 조달의 중개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4. 국제무역이 대규모로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주도형 개방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국경을 초월한 ML/TF 위험에 노출돼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ML/TF에 특히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해외 태생 인구나 이민자 송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해외 송금 관련 위험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외환 통제도 국제거래 관련 위험 완화에 기여한다. 차명계좌(개인이 제3자에게 자기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는 자금세탁과 조세범죄에서 모두 빈번하며 그 특성상 수사가 어렵다.
5. 한국의 금융부문은 상당히 발달해 있으나 역내에서나 세계적으로나 금융 중심지는 아니다.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다수 직군(특히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은 사실상 규모가 작다.

1) 1987.11.29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이후로는 테러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6. 대기업들과 강하게 연계된 2명의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널리 알려진 고위급의 부패스캔들은 일반 대중의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반부패 조치 등이 크게 강화되었다. 금융회사는 전반적으로 유독 평판 관련 위협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포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지하경제 추정 규모는 국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행 및 효과성의 전반적 수준

7. 한국의 AML/CFT 제도에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국의 위협과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금융정보의 활용 및 생성, 자국 ML/TF 위협에 대한 이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 공식·비공식적 국제협력, 테러자금조달 수사·기소 등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감독 강화, 예방조치 이행, 법인 및 법률관계 남용 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처벌, 정밀금융제재(TFS) 이행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8. 제도이행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대체로 견고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위협기반 접근법의 적용, 정밀금융제재(TFS), 비영리단체(NPOs), 정치적 주요인물(PEPs),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무 적용, 법인의 투명성 측면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9. 지난 상호평가 이후 한국은 ML/TF 범죄와 몰수체계 등 법제도를 개선했다. 몰수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중점 과제로 지정됐다. 고객확인(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들은 더 엄격해졌으며 금융그룹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도 강화되었다.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및 기관간 협력·정보공유 수준도 상당 부분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에서 자금세탁범죄(ML)에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모든 특정비금융사업자들(DNFBPs)에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추가 과제가 남아있다.

위험평가와 협력조정 및 정책수립

10. 한국 당국들은 자국 ML/TF 위협에 대해 대체로 우수하고 일관된 이해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당국들의 위협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위험평가 과정 및 위협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입증하는 3차례의 국가위험평가(NRA)

실시 등 지속적인 위험평가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영리단체(NPOs)와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부문으로부터 정보가 추가된다면 한국은 위험 이해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책과 활동은 대체로 국가 위험평가(NRA) 결과에 상응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한국의 대응은 새로운 위험에 대해 한국 당국들의 조정 및 신속한 대응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다.

11. 한국은 정책 및 운영 차원에서 AML/CFT 사안에 대한 정책 조정·협력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정책조정은 여러 정부기관들, 민간부문의 기관들과 비영리단체(NPOs)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담 협의회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확산금융(PF) 관련해 명확한 협력기제가 마련되면 보다 강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정보와 자금세탁범죄(ML) 수사·기소·몰수

금융정보의 이용

12. 한국의 법집행기관들은 수사·기소·처벌, 범죄수의 추적, 위험 확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한다. 법집행기관들은 다양한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 분석정보를 잘 활용하고는 있으나 고위험 부문에서 전략분석이 추가돼야 할 필요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정규인력 확대 및 지속적인 IT 자원의 개선을 통해 분석 및 정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13. KoFIU는 STR 품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왔고, 이 때문에 보고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AML/CFT 제도상 카지노를 제외한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는 의심거래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의 유용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자금세탁범죄(ML)

14. 한국 법집행당국들은 '팔로더머니(follow the money)'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자금세탁범죄(ML)를 확인, 수사하는데 유리한 지점에 위치해있다. 2017년

이후 정책 및 운영상의 변화에 따라 기소 건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유관기관 간 조정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한다. 확인된 위험에 부합하여 자금 세탁범죄(ML)를 수사·기소·처벌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자국에서 가장 빈번하고 만연한 범죄수익 생성 범죄인 조세범죄가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때문에 상당부분 약화된다. 자금세탁범죄 유형별로 보면 자기 자금 세탁 건의 경우 수사·기소·유죄판결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독립적 자금 세탁, 제3자 자금세탁, 해외 전제범죄 기반 자금세탁이 적극적으로 추적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금세탁 유죄판결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실치 않다. 조세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안조치가 드물다.

몰수

15. 한국 당국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범죄자들로부터 유·무형의 자산 및 그와 동일한 가치의 재산 등 여러 자산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몰수 절차는 번거롭지 않고 효율적이며 당국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강력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몰수 결과와 타깃부문들은 자국 위험과 대체로 부합하며 범죄수익 환수, 세금 추징, 반환 등을 통해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상당부분 박탈할 수 있다. 한국은 가상자산 몰수와 관련하여 최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되는 액수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사기 수익의 몰수 능력을 확대한다면 더욱 강력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16. 관계당국들은 현금·무기명지급수단(BNI)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적발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갖추고 있다. 압수·몰수는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부과되는 제재들의 강도는 낮은 편이지만 재범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억제적이다.

테러 및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범죄

17. 한국은 자국의 테러나 테러자금조달(TF)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평가다. 테러 관련 기소건은 지금까지 1건뿐이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사건 1건도 기소나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자국

위험 프로파일과 일치한다.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86차례로 법집행기관이 조사를 실시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 사례들을 보면 한국이 자국의 특정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취약성에 따라 테러자금조달 방지(CFT)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이 많지 않아 법집행기관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소스를 통해 테러자금 조달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기관 간 협력은 활발하며 테러자금조달 수사는 국가적 전략과 잘 통합되어 있다. 테러자금 조달 관련 처벌은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실제 형이 선고된 적은 없다. 추방을 비롯한 대안적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모집·이동·사용 방지

18. 한국은 정밀금융제재(TFS)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과 카지노 외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이행의무 미부과 등과 같은 적용 범위상 문제들이 남아 있다. 금융기관과 카지노는 제재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동결 의무가 있다. 다만 정밀금융제재(TFS) 관련 지침이 없어 자금이 동결되는 대신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한국 AML/CFT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카지노 외 DNFBPs는 TFS 의무 이행 대상도 아니고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 유엔 제재를 지지하고 자국 내 거래제한 대상자를 지정했으며 외국의 지정 요청을 이행하고 2억 7천2백만원 상당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자산을 동결하였다.
19. 한국은 비영리단체(NPOs)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위험을 낮게 평가하였다. 일부 NPOs는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어떤 공통의 성향 등을 이유로 위험군으로 선정되었다. NPOs의 직접적 참여 및 NPO 부문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수반된다면 평가결과는 더욱 설득력 있고 정교해질 것이다. 위험 NPOs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강력한 보고의무가 있고 감독을 받으며 지속적인 지도·교육 등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위험 NPOs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 한국은 테러자금조달 맥락에서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조치는 한국의 낮은 테러자금조달 위험 프로파일에

부합한다.

확산금융

21. 북한 관련 확산금융(PF)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 관련 사안을 전담 처리하는 정부 부처(통일부)가 있다. 대북, 대이란 제재는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한국은 PF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에 따라 직접 개인 108명과 법인 및 단체 90개를 지정했고 11개 제재에 동의했으나, 이러한 결의에 따라 자산을 동결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정 관련 당국 간 협력은 원활한 편이나 PF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조정 체계는 없고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22. 앞서 즉시성과 10에서 언급한 체계가 PF 관련 정밀금융제재(TFS) 이행 시에도 사용되며 우려점(TFS 지침의 부재 등)도 같다.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대체로 TFS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확산 관련 자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 부문의 이해도가 높았다. 이러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감독을 받으며, 감독기관들은 TFS 관련내용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지도·안내 노력을 한다. DNFBPs(카지노 제외)에 확산금융 관련 TFS 이행 의무가 적용되지도, 감독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한국 AML/CFT 체계에 범위상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예방조치

23. 한국에서 금융활동 대부분은 은행·증권·보험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그 외 다른 유형의 금융회사들이 금융부문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낮은 편이다.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FATF 권고사항을 대부분 포함하는 종합적인 AML/CFT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규제 체계에 일부 공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부패범죄가 주요 전제범죄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국내 PEPs 관련내용의 부재는 심각한 사안이다. 불법도박이 한국에서 또 다른 주요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카지노가 종합적 AML/CFT 의무이행 대상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가위험평가에서 일부 DNFBPs 부문에서 ML/TF 위험이 존재하거나 새로이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 DNFBPs 부문에는 AML/CFT 이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24. 규모가 큰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자신들의 ML/TF 위험과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한국 당국들의 적극적인 지도·안내 및 교육, 기타 노력들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다.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 및 일부 카지노는 위험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나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고객확인(CDD), 실제소유자, 정밀금융제재(TFS), 새로운 기술, 정치적 주요인물(법적 의무는 아니나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포함)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대체로 이해하고 또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명 계좌 이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카지노는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의 품질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은행 부문 위주로 여전히 면피성 보고 관련 우려가 남아있다.

감독

25. 금융회사와 카지노 인·허가/등록 관련 조치들은 대체로 잘 갖춰져 있다. 한국의 기관 및 감독체계가 복잡하기는 하나 수탁기관(84번 문단 참조)간 협력·조정은 원활하다. 카지노를 제외한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는 AML/CFT 제도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감독대상도 아니다.
26. 대부분 감독기관들이 각각의 감독 대상 부문의 ML/TF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감독을 위한 강력한 위험 기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다만 롤기반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다. KoFIU와 금융감독원은 자원이 확대되면 감독 측면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독기관들은 개선조치로 행정 또는 금전 제재를 부과하며, 이들 조치는 효과적·억제적이나 완전히 비례적이라 할 수는 없다. KoFIU는 감독 대상 부문들에 적극적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지도·안내 노력도 하는 편이나 정밀 금융제재(TFS) 관련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실제소유자

27. 법인 관련 ML/TF 위험에 대한 한국의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ML/TF 위험이 있는 법인의 유형은 확인했으나 이들 법인들이 유독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이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법집행기관들이 자금세탁이나 전제범죄 사건에서 모두 기업구조를 이용한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점은 중요하다. 무기명 주식 폐지, 명목상 주주·이사 폐지 등 법인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종합적인 등기소 정보망이 있어 법인 관련 기본 정보 및 법적 소유자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권한 당국은 소유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기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만 아니면 이러한 등기소를 통해 실제소유자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소에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가능성은 있다. 권한당국은 또한 금융회사나 카지노로부터 직접 실제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영장이 필요해 정보 수집단계에서 이 방법을 쓰기는 어렵다.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법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제한적이다.

28. 한국법상 개설 가능한 신탁 유형은 상사신탁과 민사신탁(회박)이다. 상사신탁은 인·허가 및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이 현저히 완화된다.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사신탁과 외국신탁의 존재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국제협력

29. 한국의 형사사법공조(MLA) 및 범죄인인도 요청/제공 체계는 효과적이다. 특히 양자조약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효과적이며, 주요 상대국들과의 협력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한국의 자금세탁범죄 및 탈세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국가들과도 그와 유사한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0. 법집행기관과 감독기관 등 권한당국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 파견 직원을 보내거나 컨택 포인트를 두는 등 상대국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갖추고 있다. KoFIU의 정보제공 및 요청 수는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인원 수준은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협력 수준은 대체로 자국의 위험과 일치하나 국외자산도피 및 조세범죄 관련 위험을 감안할 때 평가팀은 실제소유자 정보 관련 협력 수준은 상향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개선과제(Priority Actions)

한국은

- a)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 b) 국내 및 국제기구 정치적 주요인물(PEPs)을 포함하도록 AML/CTF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 c)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예를 들어 전제범죄의 범위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는 범죄들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
- d)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e)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추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활성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도구들을 탐색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f) 동결 의무를 DNFBPs와 모든 자연인·법인까지 확대하고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해야 한다.
- g) 동결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밀금융제재(TFS) 이행 관련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PF 관련 조정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 h) KoFIU의 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KoFIU 기관 내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 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